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04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호 신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및 위촉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전문화(안 제3조 개정)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21. 09. 30. ~ 2021. 10. 20.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기능)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이라 함”) 심의 사항에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고,

< 「아동복지법」 제8조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3조(구성)**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아동·사회복지 등 분야별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임.

<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보호조치와 사후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2. 17.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05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요청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 위탁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온터어린이집 (오정화)	솔샘로5길 92 (정릉3동)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19.01.01. ~ 2023.12.31.	79/61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2022.02. 예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19.01.01.부터 2023.12.31.까지 5년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온터 어린이집 운영 수탁체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체 변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변경위탁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 경쟁 참여 가능)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28p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육분야의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민간위탁 조례」 제7조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변경위탁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 접수에 이어 수탁체의 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수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수탁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보육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됨.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06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맞벌이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구립 돌봄센터 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아래 센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 라 함)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재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민간위탁하려는 ‘돌봄센터’ 위탁사업범위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현황>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정원 (현원)	위탁 운영기간	건물무상 임대기간	소요예산	비고
종암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종암로19길 18(종암중 양교회)	나경훈	49 (44)	2017.2.1~ 2022.1.31	2014.1.1~ 2023.12.31. (소유자:종 암중앙교회)	8,664천원(월) (국시구)	시설장: 1인 종사자: 2인 기본운영비: 월 780천원(국시) 토요운영비: 월 304천원(국시) 구비운영비: 월 500천원(구비)

※ 위 돌봄센터의 건물 무상임대기간은 2014.1.1.~2023.12.31.(10년)이며, 위탁운영기간은 2017.2.1.~2022.1.31.(5년)으로 현 운영기관이 2014~2017년에 이어 재위탁 운영 중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에게 5년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1조의2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07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의 법령에 의거한 대상자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규정(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21. 09. 30. ~ 2021. 10. 20.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에 누락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각 법령에 따른 대상자 및 감면 정도〉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3급인 경우)	현행 조례 반영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국공립 공원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 3급인 경우)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국공립 자연휴양림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이용료 50% 감경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08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조례 중 관람료 면제 근거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등) 운영 근거 마련

-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안 제9조)
- 그 밖에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21. 09. 30. ~ 2021. 10. 20.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선잠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함”)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등) 운영 근거와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업무)는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급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총량관리를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웹사이트를 통폐합 운영 하도록 하되, 법령상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음.

- 현재 박물관은 전시 및 행사뿐 아니라 신규 등록 소장품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상 성격이 구청 대표 홈페이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9조(관람료의 면제)**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²⁾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행령 16조제1항)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 인용법명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박물관의 홍보·정보 제공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6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 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문화 행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사결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규정

- 2014. 5.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 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임.

나. 출연근거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³⁾,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규모

-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388만원이 증가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94%인 3억 1,53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56만원 규모임.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대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증감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출연금	14,977,678	16,187,095	15,871,565	본예산 대비: 893,887	신규인력 및 자연상승 인건비, 신규사업비 증가 등
				최종예산 대비: :감329,134	자본적지출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감액

라.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은 관련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액 확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바, 출연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7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1. 2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개정 2014. 5. 28.)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
 - 운영비 분담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함)는 2015. 12. 15.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나. 출연근거

-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은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를 성북구가 분담하고 있음.

출연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다. 출연규모

- 2022년도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총 13억 5,510만원이 될 예정이고, 이 중 협약에

따른 성북구의 출연금은 전년대비 515만원이 증가된 2억 7,100만원 규모임.

〈전년도대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A)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265,850	265,850	271,000	5,150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 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